



우체국보험 가입한도액 인상 보류

이혜은 연구원

■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‘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’ 추진계획을 보류하기로 함.

- 개정안은 우체국보험 가입한도액¹⁾을 4,000만 원에서 6,000만 원으로, 최초연금액²⁾을 연간 900만 원에서 1,5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,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1997년부터 동결됐던 우체국보험 가입한도액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정의 취지임.
- 하지만 행정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후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국내 보험회사 단체 등으로부터 반대 입장을 전달 받았으며,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개정을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함.

■ 미국 보험회사들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통해 "국영보험이 가입한도액을 50% 인상하면 민간 보험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입법예고 기간이 8일로 짧은 것은 한·미 FTA 투명성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"는 반대서한을 우정사업본부에 보냄.

- 미국상공회의소가 언급한 FTA 조항은 “우체국보험은 보험상품의 가입한도를 인상하기 전에 금융위와 협의해야 하는 한다”는 부분임.
- 이런 이유로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체국보험이 보험상품의 가입한도를 올리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.

■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가입한도액 증액에 대한 국내외 보험업계 등의 반대 의견과 입법 예고기간이 짧아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협의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감안해 관련 규정을 제외했으며,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반대 의견이나 FTA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해명함.

1) 생명보험 가입자가 사망 후 가족이 수령하는 금액.
 2) 연금보험 가입자가 1년간 받게 되는 연금 액수.

- 추후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보험업계 및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우체국보험 가입한도 증액을 추진할 예정임.
- 한편 ‘한미 FTA가 발효된 뒤에는 우정사업본부가 가입한도를 인상하는 관련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’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체국보험 가입한도는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관한법률」 제10조에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고 설명함.
- ‘미국 상공회의소에서 법 개정이 FTA 정신에 위배된다며 이를 중지하지 않으면 보복이 따를 수 있다는 항의 서한을 발송했다’는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 상공회의소 서한에는 가입한도액 증액을 중지하지 않으면 보복이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사실과 다르다고 밝힘.

(우정사업본부, 보도자료 등, 1/5)